

# 중재시술인증제 시행 규정

제정 2011년 4월 15일

일부 개정 2012년 9월 24일

일부 개정 2013년 1월 31일

일부 개정 2013년 9월 11일

일부 개정 2014년 7월 4일

일부 개정 2014년 9월 29일

일부 개정 2015년 4월 17일

일부 개정 2016년 7월 1일

일부 개정 2018년 6월 5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인증제 관리위원회

# 중재시술 인증기관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 분야의 인증기관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중재시술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란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문적 또는 의료 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중재시술 영역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인증하는 임상기관을 말한다.

## 제 3 조 (의의 및 의무)

1. 인증기관의 자격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중재시술 영역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할 수 없으며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2. 인증기관은 중재시술의 질적 표준화 및 의료인의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가진다.
3. 인증기관은 인증의의 중재시술인증제 시술 적정성 평가 시행 과정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4. 인증기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주관하는 Korean PCI 등록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제 4 조 (주관)

인증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하에 인증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5 조 (인증 요건)

인증기관의 자격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신청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
  - 1) 1개소 이상의 심혈관 조영실 및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IABP 혹은 PCPS, EBS 등의 생명유

지장치를 갖추도록 권고한다.

- 3) 해당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On-site surgery)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응급 시 전원하여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전문병원과 협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 1) 중재시술 인증의(이하 “인증의”)의 자격을 갖춘 시술의가 2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 2) 심혈관 조영실 당 전문 방사선사 1명 이상 및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3. 실적 및 검증

전년도 시술 건수 100례 이상의 중재시술을 시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4. 교육

- 1) 중재시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정기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한다.
- 2) 제2항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방사선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하 심혈관기술연구회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혈관기술연구회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 6 조 (기관 인증 방법)**

인증기관의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대한심혈관중재학회로 제출하고 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인증기관의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1. 기관 인증 신청서
- 2. 심장혈관조영실(cathlab) 시설 및 장비 보유 증명서
- 3. 중재시술 스태프 명단 및 그에 대한 아래 증빙자료

| 구분               | 증빙자료                           |
|------------------|--------------------------------|
| 의사               | 소속 병원의 재직증명서                   |
|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소속 병원의 재직증명서 및 심혈관기술연구회 자격증 사본 |

- 4. 전년도 총 시술 건수 보고서
- 5. 심장 및 혈관 중재수술 협력 병원 협약서 (해당기관)

**제 7 조 (자격 인정 유효기간)**

- 1. 인증기관 자격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2. 매 5년마다 인증기관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위 갱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인증기관의 자격상실)**

인증기관 자격 상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9 조 (심사료)**

인증기관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신청 기관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재시술 인증기관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중재시술 인증기관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자격갱신 대상)

중재시술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인증기관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제 3 조 (자격갱신 요건)

인증기관의 자격 갱신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신청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시설 및 장비

- 1) 1개소 이상의 심혈관 조영실 및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IABP 혹은 PCPS, EBS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갖추도록 권고한다.
- 3) 해당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On-site surgery)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응급 시 전원하여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전문병원과 협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2. 인력

- 1) 중재시술 인증의(이하 “인증의”)의 자격을 갖춘 시술의가 2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 2) 심혈관 조영실 당 전문 방사선사 1명 이상 및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 3. 실적 및 검증

전년도 시술 건수 100례 이상의 중재시술을 시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 4. 교육

- 1) 중재시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정기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2항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방사선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하 심혈관기술연구회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혈관기술연구회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 4 조 (자격갱신의 방법)**

1.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인증기관 자격 갱신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 갱신 및 인증패를 교부한다.

**제 5 조 (서류제출)**

인증기관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 유효기간 만료 전 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고지한 날까지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인증 (갱신) 신청서
2. 심장혈관조영실(cathlab) 시설 및 장비 보유 증명서
3. 중재시술 스태프 명단 및 그에 대한 아래 증빙자료

| 구분               | 증빙자료                           |
|------------------|--------------------------------|
| 의사               | 소속 병원의 재직증명서 및 중재시술 인증의 인증서 사본 |
|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소속 병원의 재직증명서 및 심혈관기술연구회 자격증 사본 |

4. 전년도 총 시술 건수 보고서
5. 심장 및 혈관 중재수술 협력 병원 협약서 (해당기관)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조치)**

1. 중재시술 인증기관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기관은 인증기관 자격을 상실한다.
2.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자격을 상실한 기관은 인증기관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이후에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 자격갱신을 신청하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승인한 경우에만 인증기관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기관에 대한 조치)**

1. 인증기관 자격갱신을 위한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기관은 인증기관 자격을 상실하며, 그 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인증기관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기관이 이후 타당한 사유를 들어 자격갱신을 다시 신청한 경우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장이 최종 승인한 경우에만 자

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8 조 (심사료)**

인증기관 자격 갱신을 위하여 해당 인증기관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 분야의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중재시술 인증의(이하 ‘인증의’)”라 함은 심장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중재시술학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학문적 또는 의료 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 하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중재시술 영역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인증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 제 3 조 (의의 및 의무)

1. 인증의 자격은 해당 진료 분야의 임상 의사로서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 세부 분야에서의 훌륭한 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본 자격은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2. 인증의는 학문과 환자 진료 수준의 향상 및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후진의 양성과 교육지도에 헌신할 의무를 가진다.
3. 인증의는 중재시술인증제 시술 적정성 평가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제 4 조 (주관)

인증의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하에 인증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5 조 (인증 방법 및 요건)

### 1. 인증 방법

인증의 자격 인정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제출하고 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인증의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1) 인증의 신청서
- 2) 심장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 3) 중재시술인증제 연수평점 카드 혹은 이수증명서
- 4) 최근 2년간 개인별 시술 건수 보고서
- 5) 시술 보조에 대한 주 시술자 확인서

## 2. 인증 요건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으로서 심장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최근 2년간 시술 건수 기준 주 시술자로서 150례 이상의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의 경력을 갖춘 자.
-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근 2년간 시술 건수 기준 주 시술자로서 75례 이상의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주 시술 건수와 보조 시술 건수의 1/2을 합하여 150례 이상인 자.
- 3)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강좌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최근 2년간 1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득한 자.

### 제 6 조 (중재시술인증제 등록사업 및 시술 적정성 평가)

관리위원회는 인증의의 바람직한 질 관리를 위하여 중재시술인증제 등록사업과 시술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등록사업과 시술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7 조 (자격 인정 유효기간)

1. 인증의 자격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인증의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8 조 (인증의 자격상실)

인증의 자격 상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9 조 (심사료)

인증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신청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중재시술 인증의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과 양질의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자격갱신 대상)

1. 중재시술 인증의(이하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인증의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2. 만 55세 이상으로 인증제 관리위원회에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 인증의 자격 갱신을 위한 평점 취득 및 기타 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3.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해외체류 기간을 제1항의 5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며, 이를 위해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인증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조 (자격갱신 요건)

1.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인증의 자격 유효기간 중 주 시술자로 시술 건수 기준 2년간 평균 150례 이상의 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최근 5년간 중재시술 인증의 교육 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25평점을 취득해야 하며, 중재시술인증제 시술 적정성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 시술자로서의 참여 건수가 반드시 75례 이상 있을 경우에만 보조 시술자로 참여한 시술 건수의 절반을 주 시술자로 참여한 건수로 인정한다.

## 제 4 조 (자격갱신의 방법)

1.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인증의 자격 갱신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당 인증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은 상임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의 갱신 및 인증서를 교부한다.

## 제 5 조 (서류제출)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자격 만료 전 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고지한 날까지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장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중재시술 인증의 인증서 사본
3. 연수평점 기록지 및 이수증명서
4. 인증의 자격 유효기간 중 2년간 개인별 시술 건수 보고서
5. 시술 보조에 대한 주 시술자 확인서

#### **제 6 조 (중재시술인증제 시술 적정성 평가 결과의 반영)**

인증의 자격의 갱신 시 중재시술인증제 시술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제 7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및 평점 인정은 『중재시술 인증의 교육 규정』을 적용한다.

#### **제 8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인증의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이후에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 자격갱신을 신청하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승인한 경우에만 인증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 9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인증의 자격갱신을 위한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인증의 자격을 상실하며, 그 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인증의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이거나 갱신 만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가 이후 타당한 사유를 들어 자격갱신을 다시 신청한 경우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장이 최종 승인한 경우에만 인증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 10 조 (심사료)**

인증의 자격 갱신을 위하여 해당 인증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 **부 칙**

1. 본 규칙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재시술 인증의 교육 규정

## 제 1 조 (목적)

중재시술인증제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 제 2 조 (교육회기)

연수교육 회기는 춘계통합학술대회 이후부터 다음해 동 학술대회 이전까지로 한다.

## 제 3 조 (의무교육)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규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석하고 그 밖의 교육과정을 통해 제7조에 정해진 평점을 이수해야 인증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제 4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심혈관중재학회
2.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하 연구회
3. 기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 5 조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연수교육, 실습, 국내외 중재시술 관련 심포지엄 및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한다.

## 제 6 조 (교육의 내용)

1. 연수교육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규 학술대회 및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하 연구회 학술대회로 구성된다.
2. 연수교육의 내용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및 연구회 책임자가 결정한다.
3. 실습교육은 국내외 전문가의 시연 및 워크숍 프로그램의 일부인 증례발표 및 토의로 대체될 수 있다.
4. 병원실습 및 시술견습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신청자의 지역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병원 책임자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 제 7 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참여, 국내외 학회 참여, 실습 및 학회발표로 하며 연간 5평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종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 교육종류                                     | 평점             |
|--|----------------|
| 1.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규 학술대회<br>(동계통합학술대회 및 워크숍) | 2평점            |
| 2.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하 연구회 학술대회                 | 1평점            |
| 3. 실습                                    | 1평점/1일(6시간 이상) |
| 4. 국내외 학술대회                              | 1평점/1일         |

- 1) 연 평점 5점 중 최소 2점 이상은 위 1번, 2번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2)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학회는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3)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규 학술대회에서 증례 및 연구결과 발표 시 발표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
- 4) 연간 6개월 이상의 해외 장기연수 중인 경우에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승인을 받아 평점 취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타 평점 취득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5) 국내외 학술대회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로 규정한다.

#### 제 8 조 (교육경비)

연수교육 및 실습을 시행할 때에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참석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재시술인증제 관리 규정

## 제 1 조 (인증제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중재시술 인증기관 및 인증의의 평가를 비롯한 중재시술인증제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인증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3. 관리위원장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이사장이 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4. 관리위원장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으며, 인증제 관리이사라 칭한다.
5. 위원 중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선정한다.
6. 관리위원회 산하에 기관인증분과와 회원인증분과의 2개 분과를 설치 운영한다.

## 제 2 조 (기관인증분과)

1. 기관인증분과는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장은 이사장이 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기관인증분과 위원은 이사장이 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3. 기관인증분과는 중재시술 인증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분과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제 3 조 (회원인증분과)

1. 회원인증분과는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장은 이사장이 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회원인증분과 위원은 이사장이 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3. 회원인증분과는 중재시술 인증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분과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제 4 조 (정기심사)

1. 중재시술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심사는 기관인증분과에서 매년 5월에 시행하며 수시 심사는 인증제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2. 중재시술 인증의에 대한 정기심사는 회원인증분과에서 매년 5월에 시행하며 수시 심사는 인증제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재시술 인증기관 및 인증의 자격 인정에 대한 세부시행규칙

## 제1장 중재시술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시행규칙

### 제 1 조 (인증기관의 지정)

중재시술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의 중재시술 책임자는 대한심혈관 중재학회에 별지 서식과 기타 『중재시술 인증기관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인증분과는 이를 심사하여 인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때에 평가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 후 별지 서식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 2 조 (인증기관의 의무)

인증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중재시술 책임자에게 인증기관 인증 및 그 갱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3 조 (인증기관의 재심사)

관리위원회 기관인증분과는 매 5년마다 기 지정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시술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장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인증기관 갱신 및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4 조 (인증기관 자격 상실)

이사장은 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이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2. 인증기관에 대한 재심사 후 요구되는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제 5 조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조치)

중재시술 인증기관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6 조 (수수료)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중재시술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인증신청 기관에 소정의 심사료, 갱신료, 인증서 교부비 등을 고지할 수 있다.



## 제2장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 인정에 대한 시행규칙

### 제 1 조 (인증의 자격 인증)

중재시술 인증의(이하 “인증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별지 서식과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원인증분과는 이를 심사하여 인증 요건을 충족하다고 판단될 때에 평가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 후 별지 서식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 2 조 (인증의의 의무)

인증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인증의 자격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인증의 인증 및 그 갱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3 조 (인증의 재심사)

관리위원회 회원인증분과는 매 5년마다 기 인정된 인증의를 대상으로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자격 갱신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장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인증의 갱신 및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4 조 (중재시술 등록 사업 평가)

관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재시술 등록 사업 평가를 시행하며, 중재시술 등록 사업 참여함을 조건으로 기 인정된 인증의를 대상으로 시술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장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인증의 유지 및 갱신,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록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시행규칙에 의한다.

### 제 5 조 (시술 적정성 평가)

관리위원회는 모든 인증의를 대상으로 인증 기간 중 1회 이상 시술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장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인증의 유지 및 갱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술 적정성 검토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시행규칙에 의한다.

### 제 6 조 (인증의 자격 상실)

이사장은 관리위원회 회원인증분과의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의가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인증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2. 인증의 인증 및 갱신에 요구되는 연수평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
3. 인증의에 대한 재심사후 요구되는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제 7 조 (재심사 신청 기한)**

제6조에 의하여 인증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의 지정을 재신청 할 수 있다.

#### **제 8 조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조치)**

중재시술 인증의를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9 조 (수수료)**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소정의 심사료, 갱신료, 인증서 교부비 등을 고지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칙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증을 받는 날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중재기술인증제 등록사업에 대한 시행규칙

#### 제 1 조 (중재기술인증제 등록사업 참여 대상)

1. 중재기술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등록사업 참여 조건으로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단, 추후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에서 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갱신하였을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만 55세 이상으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 등록사업 참여 의무를 면제한다.
4. 위 3번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2 조 (중재기술인증제 등록사업 참여자의 의무)

중재기술인증제 등록사업(이하 “등록사업”)에 참여 대상 인증의는 성실히 등록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중재기술인증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서 등록사업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3 조 (등록사업 시행 기간)

인증의 자격을 취득, 갱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4 조 (등록사업 정기 평가)

등록사업에 대한 정기평가는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11월 등록사업 평가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심사를 시행한다. 정기 평가 안내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제 5 조 (등록사업 참여 방법)

1. 등록사업은 온라인 등록과 CD 등록으로 구분하며, 온라인 등록은 웹([www.ecrf.kr/cpci](http://www.ecrf.kr/cpci))에서 기술 정보를 입력하며, CD 등록은 우편 접수를 통하여 기술 동영상을 등록한다.
2. 온라인 등록에서는 세부적인 기술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CD 등록을 위하여 Case 기술동영상을 CD 제작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CD등록을 위한 CD 및 우편발송비를 지원한다.
4. 참여자는 사전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사무국에서 기관코드(ID), 회원코드, 비밀번호(PW)를 부여 받아야 한다.

#### 제 6 조 (등록사업 평가 방법)

관리위원회는 아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적정 기술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에 필요한 최소 등록 건수는 연 30례를 기준으로 한다.
2. 등록된 시술정보와 CD 영상으로 평가한다.
3. 시술 과정은 공개된 중재시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편 타당한 시술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제 7 조 (평가 결과의 회신)**

관리위원회는 등록사업 평가 결과를 인증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권고문을 작성할 수 있다.

#### **제 8 조 (등록사업 평가에 응하지 않은 인증의에 대한 조치)**

1. 등록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등록 건수에 미달되거나 등록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관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 단, 타당한 사유를 들어 등록사업에 다시 참여할 경우,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 경우에만 인증기관 및 인증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 9 조 (부적절시술 시행 인증의에 대한 조치)**

1. 등록 사업 평가를 통하여 해당 인증의의 시술 과정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 단, 타당한 사유를 들어 시술 적정성을 반론할 수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 경우에만 인증기관 및 인증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4장 시술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시행규칙

### 제 1 조 (시술 적정성 평가 대상)

1. 중재시술 인증의 신청 시 시술건수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인증의를 대상으로 한다.
2. 만 55세 이상으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 시술 적정성 평가 참여 의무를 면제한다.
3. 위 2번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인증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2 조 (인증의의 의무)

인증의는 성실히 시술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인증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 서 시술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3 조 (평가 기간)

인증의 자격을 취득, 갱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4 조 (정기 평가)

시술 적정성 정기 평가는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심사를 시행한다. 인증의는 자격을 취득 혹은 갱신한 날로부터 인증의 자격 인정 유효일까지 최소 1회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 평가 안내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 제 5 조 (평가 방법)

1. 평가 대상 인증의는 주 시술자로서 평가 전년도에 시행한 증례에 대해 환자등록번호, 시술자명, 시술일자, 진단명을 포함한 시술 건수 보고서를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제출한다.
2. 관리위원회는 현재 인증의 중 일부를 당해 적정성 평가 대상 인증의로 선정한다. 모든 인증의는 자격 인정 기간을 주기로 최소 1회 이상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다.
3. 관리위원회는 당해 선정된 평가 대상 인증의에게 제출한 시술건수보고서에서 10례를 무작위 추출하여 해당 증례의 세부 시술 정보 및 시술 동영상의 CD를 요청한다.
4. 인증의는 Case 시술동영상을 CD 제작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는 CD접수를 위한 CD 및 우편발송비를 지원한다.
5. 관리위원회는 아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적정 시술 여부를 평가한다.
  - 1) 시술건수보고서 상의 시술정보와 CD 영상으로 평가한다.
  - 2) 시술 과정은 공개된 중재시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편 타당한 시술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제 6 조 (평가 결과의 회신)**

관리위원회는 기술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인증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권고문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최초 평가 결과로 적정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 경우, 기술견수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Case도 추가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 7 조 (기술 적정성 평가에 응하지 않은 인증의에 대한 조치)**

기술 적정성 평가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인증의는 인증의 자격 상실 및 갱신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 8 조 (부적절기술 시행 인증의에 대한 조치)**

1. 기술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해당 인증의의 기술 과정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의 자격 상실 및 갱신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단, 타당한 사유를 들어 반론할 수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통해 평가 결과를 철회할 수 있다.